

<p>부 칙</p> <p>이 조례는 도로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특별시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特別市建設工事品質試驗等에關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建設委員會 尹福永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尹福永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本議員은 서초 제3선거구 출신 建設委員會 所屬 尹福永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서울特別市建設工事品質試驗等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p> <p>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2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는바,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特別市 建設資材試驗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품질시험의 종류를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나누며 셋째,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1996년 12월 18일 鄭在天委員의 제안과 張精一委員의 동의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建設委員會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p> <p>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발주자, 주택건설업자의 용어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수정하고 둘째, 이 조례안에서 건설기술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p> <p>동 수정안에 대하여 저희 建設委員會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p> <p>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저희 建設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建設工事品質試驗場에關한條例案을 建設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제3조제1호중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등”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p> <p>제10조제7항중 “검사시험시에는”앞에 “시험소장의”를 삽입한다.</p> <p>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를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9조”로 한다.</p> <p>별지 제3호서식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를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10조”로 한다.</p> <p>별지 제4호서식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을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12조”로 한다.</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등과</p>
--	---

<p>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는 선정시험·관리시험 및 검사시험으로 한다.</p> <p>제 3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시험”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유기물함량시험·골재원시험 기타 사전 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 “건설업자 등” 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관리시험”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자 등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검사시험”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이라 함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p>제 4 조(품질시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②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다.</p> <p>③ 발주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p>	<p>에 대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검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및 자치구에서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 및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p>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 5 조(품질시험의 기준)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별표9의 기준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p> <p>제 6 조(품질시험 의뢰서류의 처리) 시험소장은 시험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서류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p> <p>제 7 조(품질시험 종목의 고시) 시장은 매년 시험소장이 실시할 수 있는 품질시험의 종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 8 조(품질시험의 실시) 시험소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가 시험시 입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p> <p>제 9 조(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대행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등은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선정시험 또는 관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건설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선정시험 또는 관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그 의뢰내용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시험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완료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p>
---	--

제10조(검사시험의 의뢰시기 등)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연도 발주예정인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검사시험 대상 공사현황을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시험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가 시험소장에게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착공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시험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검사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은 별표1의 검사시험 점검 요령에 따라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시험을 의뢰한 발주자는 검사시험 의뢰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소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험소장은 검사시험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1월 이내에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험소장은 검사시험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시험소장의 검사시험시에는 의뢰자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등) ① 시험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기숙사·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운수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시의 해당기관의 장은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대상 공사현황을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후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는 자는 착공후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의뢰된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표2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소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준공전까지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한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의뢰자는 그 변경내용을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시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 감독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⑦ 시험소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품질관리현장확인기동반 운영) ① 시험소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사

<p>용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확인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등 굳지 않은 레미콘에 관한 시험 2. 보도블록, 벽돌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3. 품질시험 이행여부 등 <p>③ 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시험소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확인결과 불합격자재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부서의 장 책임하에,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는 허가·인가·승인한 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외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p> <p>제14조(품질시험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 또는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규칙 제19조 별표13의 품질시험비용 산출기준에 의하여 품질시험수수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시에 소요되는 현장출장 경비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며, 그 금액은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한다.</p> <p>제15조(품질시험종목 및 처리기간) ① 품질시험종목 및 처리기간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p> <p>② 시험소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 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p>	<p>제1항의 처리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품질시험 처리기간은 시 발행 수입증지를 첨부한 품질시험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한다.</p> <p>제16조(품질시험성과표서식) 품질시험의 성과표서식은 시험소장이 시험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p> <p>제17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수수료 감면)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검사시험·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과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경우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시험소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0조(시험에 대한 협조) 시험소장은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및 기동반 운영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공고 제1996-1호('96.2.29)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 품질시험 등 수수료가 고시되기 전날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별표1]

검 사 시 험 점 검 요 령

1. 시험개요

검사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작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 위치			
총 공사비		도급금액	
감독관	소 속 :	성 명 :	(인)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 명 :	(인)
공사 개요			
첨부 : 1. 공사진전현황(공정, 장비, 자재, 관리시험계획표) 2.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배합설계 성과표			
검 사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2. 점검사항

가. 공통사항

점검내용	판정
1)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의 적정 2) 시험계획서, 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 3) 시험사의 시험능력 4) 시험기기의 규격, 수량, 성능의 적합 5) 기타 품질시험 여건	

나. 시험점검표

구분	공종	종별 (재료명등)	시험 종목	시험빈도		적기 실시 여부	시험 결과 조치	판정
				규정 빈도	실시 빈도			
○ 선정시험								
○ 관리시험								

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품질시험 유의사항 지적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내용	조치의견	비고

라. 현장확인시험

공종	종별 (재료명)	시험 종목	현장 시험	확인 시험	위치 또는 사용처	판정

비고 : 1. 중요한 재료 또는 시험종목에 대하여 현장 또는 의뢰시험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자가 무작위로 추출시험을 시행함.

2. 현장시험은 공사현장시험 또는 의뢰시험결과를 기입함.

3. 확인시험은 검사시험자의 확인시험 결과치를 기입함.

4. 위치 또는 사용처는 다음에 따라 기입함.

예) ○토공, 포장 등은 공사측점 등 위치

○교량 등 구조물은 구조물명과 사용부위명 등

마. 현장 시공 품질 확인

공종	지적내용	비고

비고 : 공종별로 거푸집조립, 철근 배근 등 시공상태가 시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기입함.

[별표2]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 점검 요령

1. 확인개요

확인일 년 월 일

공 사 명			
공 사 위 치			
총 공사비	도	급	금 액
착 공 일	준공 또는 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입 회 자	공사감독자 : 소속	성명	(인)
	현장대리인 :	성명	(인)
공 사 개 요			
첨 부 :	참고자료		
확 인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2. 점검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조 치 의 건	비 고
1.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 여부			
2.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활용의 적정 여부			
3.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품질시험 유의사항 지적에 대한 조치 여부			
5.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별표 3] 현장출장 경비 산출기준

1.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시에 소요되는 현장출장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2. 검사시험은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의 5급 1명, 6급 1명 및 7급 1명으로 평성된 인원이 1일 동안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의 5급 1명, 6급 1명 및 7급 1명으로 편성된 인원이 2일 동안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임 산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5급은 특급기술자, 6급은 고급기술자, 7급은 중급기술자로 적용한다.
5. 시험차량에 대한 경비는 구역화물의 전세 운임과 대기료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토질시험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흙의 물리시험	함 수 량	4	흙의 역학시험	압 밀	13	
	비 중	4		다짐	4	
	액 성 한 계	4		현 장 밀 도	4	
	소 성 한 계	4		실 내 CBR	10	
	수 축 한 계	4		평 판 재 하	4	
	투 수	10		골 재	체 가 림	4
	200번체통과량	4		비 중 및 흡 수 율	7	
입 도	4	마 모 율	4			
흙의 역학시험	일 축 압 축	4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 샬 안 정 도	4	
	직 접 급 속 전 단	8		아 스 팔 트 함 량	5	
	압 밀 급 속 전 단	8		추 출 체 가 림	5	
	완 속 전 단	11		마 샬 공 시 체	4	
	비 배 수 비 압 밀	8		계 작	4	
	삼 축 압 축	8		밀 도	4	
	압 밀 비 배 수	8		평 탄 성	4	
	삼 축 압 축	9		코 아 채 취	4	
삼 축 압 축	9	피 막 박 리	5			

[재료시험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콘크리트 공시체	압 축 강 도	실소요일	호안용블럭	치 수	4	
	휨 강 도	실소요일		휨 강 도	5	
	인 장 강 도	실소요일		압 축 강 도	5	
	공 시 체 썩 평	실소요일		흡 수 율	7	
콘크리트 경계블럭	치 수	4	속빈시멘트 블럭, 벽돌	치 수	4	
	휨 강 도	5		압 축 강 도	5	
	흡 수 율	7		흡 수 율	7	
보도용 콘크리트판	치 수	4	흙관	의 압 강 도	4	
	휨 강 도	5		케이블트로프	휨 강 도	5
	흡 수 율	7			테라조타일	치 수
오나먼트 타 일	치 수	4	석재(암분류)	휨 강 도		5
	휨 강 도	5		충 격	5	
점토벽돌	치 수	4	석재(암분류)	압 축 강 도	7	
	압 축 강 도	5		흡 수 율	7	
	흡 수 율	7		탄 성 파 속 도	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럭	치 수	4	석재(석재)	압 축 강 도	7	
	휨 강 도	5		흡 수 율	7	
	흡 수 율	7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시멘트기와	치 수	4	PC첨목	균 열 하 중	5	
	휨 강 도	5		콘크리트비파괴	비 파 괴	5
	흡 수 율	7		골 재	체 가 림	4
스틸그레이팅	치 수	4	비중 및 흡수율		7	
	무 계	4	단 위 중 량		5	
콘크리트코아	코 어 채 취	5	절 토 덩 어 리		7	
	압 축 강 도	5	# 200 체 통과 량		4	
맨홀뚜껑	정 하 중	4	표 면 수 량		7	
철근 및 PC선 강봉	인장 및 연신	4	연 석 량		5	

[화학시험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골 재	안 정 성	12	플라스틱	내약품성(종목당)	9	
	유 기 불 순 물	4		압 축 강 도	5	
	염 화 물	4		충 격 강 도	4	
레미콘	염 화 물 량	4		인장강도및신율	4	
석 분	비 중	4		경 도	4	
	수 분	4		흡수율(F.R.P)	5	
	입 도	4		가 열 변 형 률	5	
시멘트 및 시멘트혼화재료	비중(브샤트리에)	4	여과재료	이중벽관강성시험	5	
	분말도(브레인법)	4		편 평 시 험	5	
	응 결 시 간	4		도 료	비 중	4
	압 축 강 도	32			강 열 감 량	4
	강 열 감 량	4			염산 가용률	4
	실 리 카	5			체 가 림 (입도)	4
	불 용 해 잔분	5			실 리 카 함 량	7
	산화알루미늄	5	마 모 율		4	
	산화제이철	5	탁 도	4		
	산화칼슘	5	수질시험 (콘크리트 용수)	비 중	4	
	산화마그네슘	5		건 조 시 간	4	
	무 수 황 산	5		굴 곡 성	5	
	산화나트륨	5		냉 열 반 복	15	
산화칼륨	5	가 사 시 간		4		
수질시험 (콘크리트 용수)	페 하 (PH)	4		가 열 잔 분	4	
	중 발 잔 유 물	4		주 도	4	
	염 화 물	4		연 화 도	4	
	현 탁 물 질 량	4		스 키 닝	5	
	용해성중발잔유물	4		도막의 상태	4	
플라스틱	회 분	4	스트리킹성	4		
	비 중	4	불휘발전색체	5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시험구분	시험종목	시험처리 기간(일)		
도 료	60° 광택도	5	아스팔트루핑 및 펠트	아스팔트침투율	4		
	작업성	4		인장강도	4		
	조립자분(체분석)	4		접기	4		
	용기내상태	4		아스팔트 침투상황	4		
	냄새	4		가열감량	4		
	내알카리성	18		유성코킹계	수축률	20	
	내충격성	9			슬럼프	5	
	45°0° 확산반사율	5			보유성	20	
	수분	4			부착성	20	
	안료분	5			균열	20	
	불휘발분, 휘발분	4	내알카리성		20		
	흡수성	5	경화율		20		
	내산성	5	쉬트방수제 (ASP)		인장강도, 신율 (무처리)	4	
	은폐력	5			인장강도, 신율 (가열후)	12	
	인화성	4			인장강도, 신율 (알카리)	12	
	점도(가드너관법)	4		상호간 접착강도	12		
	점도(포드컵)	4		하지간 접착강도	12		
	내휘발유성	13		내열시험	4		
	냉동안정성	11		시트바탕면 (하지저항성)	12		
	열안정성	8		수압시험	12		
내수성	8	쉬트방수제(공통)		인열강도(무처리)	4		
점적	4			인열강도(가열후)	12		
발포폴리우레탄, 폴리스틸렌, 염 화비닐 플라스틱	밀도		4	가열수축	12		
	흡수량		5	저온굴곡성	4		
	연소성	4	쉬트방수제(에칠 렌계, PVC계)	인장강도, 신율 (무처리)	4		
	형상 및 치수	3		인장강도, 신율 (가열후)	12		
굽힘강도	4	인장강도, 신율 (알카리)		12			
압축강도	4	파단신장률(무처리)		4			
시멘트 액체방수제	응결시간	4	파단신장률(가열후)	12			
	안정성	30	파단신장률(알카리)	12			
	압축강도비	31	가열열화시험	12			
	흡수비	24	오존열화시험	12			
역청재료	투수비	24	접합성능(무처리)	4			
	역청재료	침입도	4	접합성능(가열)	12		
		인화점	4	접합성능(알카리)	12		
		용해도	4	아스팔트루핑 및 펠트	치수 및 무게	3	
		회분	4		원지의 단위무게	3	
		점도	4		아스팔트루핑 및 펠트		
		부착시험	4				
증발잔유물		4					

[별지제1호서식]

품질시험의뢰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19
 수 신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장 발 신 (인)
 계 목 품질시험의뢰서 주 소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시험을 의뢰합니다.

① 재 료 명	(※)		
② 시 험 종 목		③ 재 고 량	
		(롯드의크기)	
④ 시 료 채 취 지 명 및 장소	구 동 번지()		
⑤ 시 료 채 취 량	⑥ 시 료 채 취 자	소 속	성 명 (인)
⑦ 시 료 채 취 일	⑧ 시 료 채 취 입 회 자	소 속	성 명 (인)
⑨ 공 사 명			
⑩ 발 주 자	감 독 자	직·성 명 (인)	
⑪ 시 공 자			
⑫ 시 공 성 과 이 용 목 적	<input type="checkbox"/> 선정시험 <input type="checkbox"/> 관리시험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험		
⑬ 시 료 내 역 및 시 방			

※ 유별번호 -- 시험실시번호: 작업지시 호
 시험번호 - 시험성과통보번호:

※ 시험처리 소요기간: 일간 ※ 시험수수료: 원

유의사항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별지제2호서식]

품질시험의뢰 접수증

No

(시험소용)

재 료 명		접 수 일 자	
		처 리 기 간	
시험종목 및 시료량		시험수수료	

품질시험의뢰 접수증

No

(의뢰자용)

재 료 명		접 수 일 자	
		처 리 기 간	
시험종목 및 시료량		시험수수료	

위 재료의 시험결과는 199 년 월 일 오전 오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그 결과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 품질지도과(전화 968-7052)

[별지제3호서식]

검사시험의뢰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장 발신 (인)
참 조	검사시험과장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합니다.	
공사명	
공사개요	
발 주 자	
시 공 자	
총공사비	(현장전화:)
착공일	(도급비:)
준공일	
현공정	
첨부서류: 계획공정표 1부. 끝.	

[별지제4호서식]

품질시험의적정성확인 의뢰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장 발신 (인)
참 조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의뢰합니다.	
공사명	
발 주 자	
시 공 자	(현장전화:)
총공사비	(도급비:)
착공일	
준공일	
현공정	
구비서류: 1. 공사설계도서 1부 2. 당해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 끝.	